



기러기 아빠의 세금신고(3)

- 거주자의 종류 및 세금신고 의무

질문

G씨는 2010년 7월에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하였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빠른 정착을 위해서 영어를 익히고 직장을 얻기 위해 대학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으며 과거에 근무했던 한국 회사의 제의를 받고 2013년 11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G씨의 배우자는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남아서 생활하다가 2015년 6월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G씨의 캐나다 내 거주내용을 요약하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떠났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가족만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이때 G씨는 기간별로 캐나다에서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검토

1) 거주자의 종류 및 세금신고 의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의 종류와 각각의 세금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자(Resident)로서 캐나다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경우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는 캐나다 내와 캐나다 외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 거주자(Factual resident)로서 캐나다를 떠나 있지만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캐나다에 돌아와 살 준비가 되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질 거주자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로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는 개인이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체류'(Sojourn)는 거주(Reside)와 달리 생활기반이 없이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 캐나다 내에 주요한 거주관계를 갖고 있으면 183일 이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캐나다 공무원 등도 간주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간주 거주자의 세금신고 의무는 거주자와 대부분 같습니다.

넷째, 일부 기간 거주자(Part-time resident)로 캐나다에 신규 유학, 이민 오거나 캐나다를 떠나는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다섯째, 비거주자(Non-resident)로 캐나다에 중요한 거주관계가(Significant residential ties) 없어서 실질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서 간주 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에 근로, 사업, 양도소득이 있을 때에만 세금 신고합니다.

여섯째, 간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로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의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즉, 캐나다와 상대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시에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이중 거주자가 조세협약에 의해 상대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될 때에는 간주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간주 비거주자의 세금신고 의무는 비거주자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거주자의 종류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의 종류	주요 판단 기준	과세 방법
거주자 (Resident)	캐나다에 일상적으로 거주(reside)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실질 거주자 (Factual resident)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요한 거주관계(residential tie)가 있는 경우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간주 거주자 (Deemed resident)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sojourn)하는 경우 / 해외에 파견된 캐나다 공무원과 가족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주정부세 대신 surtax 적용)
일부 기간 거주자 (Part-time resident)	캐나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된 연도의 경우	거주 기간에 한해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비거주자 (Non-resident)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sojourn)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 내의 근로, 사업, 양도 소득 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
간주 비거주자 (Deemed non-resident)	조세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캐나다 내의 근로, 사업, 양도 소득 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

2) G씨에 대한 거주자 판단 및 세금신고 의무

G씨의 경우 기간별 캐나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세금 신고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에 처음 도착해서 생활한 기간으로 1년 중 일부의 기간만 캐나다에서 거주했으므로 일부 기간 거주자(Part-time resident)에 해당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하고, 캐나다에 오기 전인 2010년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둘째, 2011년 및 2012년은 G씨가 캐나다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한 기간으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로서 전 세계소득을 신고합니다.

셋째, 2013년 1월부터 캐나다를 떠난 시점인 2013년 11월까지에 대한 기간으로 일부 기간 거주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11월에 대해서만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넷째, G씨는 캐나다를 떠났으나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G씨는 캐나다에 살지 않지만 캐나다에 중요한 거주관계인 배우자와 부

양가족이 있으므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한국 세법에 의해서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G씨의 거주자 여부는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의해 판정되는데 최종적으로 캐나다 세법상 간주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캐나다 내에서 근로, 사업, 양도소득이 있을 때에만 세금 신고합니다.

다섯째, 가족이 캐나다를 떠난 2015년 7월 이후입니다. G씨는 캐나다에 살지 않고 가족도 캐나다에 살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도	거주자 종류	판단 근거	과세 방법
2010년 7월~12월	일부 기간 거주자 (Part-time resident)	연도 중 캐나다에 도착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거주기간인 2010년 7월~12월까지의 전 세계 소득 신고
2011년 1월~2012년 12월	거주자(Resident)	캐나다에 일상적으로 거주함	전 세계 소득 신고
2013년 1월~11월	일부 기간 거주자 (Part-time resident)	연도 중 캐나다를 떠남	거주기간인 2013년 1월~11월까지의 전 세계 소득 신고
2013년 12월~2015년 6월	간주 비거주자 (Deemed non-resident)	중요한 거주관계가 있어 거주자이나 조세협약에 의해 간주 비거주자에 해당함	캐나다 내에 발생한 근로, 사업, 양도소득만 신고
2015년 7월 이후	비거주자 (Non-resident)	캐나다에 살지 않고 중요한 거주관계가 없음	

답변

G씨는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캐나다에서 거주자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캐나다에 도착한 2010년과 캐나다를 떠난 2013년은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를 떠난 이후인 2013년 12월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캐나다에서 근로, 사업, 양도소득이 있지 않는 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G씨의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동안은 조세협약에 의해 간주 비거주자로 판정되고, G씨의 가족이 떠난 이후에는 캐나다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캐나다를 떠나는 연도에는 세금신고 외에 출국세(Departure tax), 보유자산 신고제도(List of Properties by an Emigrant of Canada) 등의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